

# 商標審查에 대한 小考(完)

##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 III. 商標法 第9條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出願된 商標가 商標法 第8條의 登錄要件에는 저촉되지 않고 識別力を 갖추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公益上 또는 個人의 利益을 保護하기 위하여 登錄을 받을 수 있도록 規定한 것이 本條項의趣旨인 것이다. 이들 條項中에서 특히 商標審查에서 가장 빈번히 引用되는 몇개의 項을 中心으로 考察하고자 한다.

#### 가. 商標法 第9條第1項第2號

國家, 民族, 公益團體, 宗敎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謔謗 또는 侮辱하거나 惡評을 받게될 염려가 있는 商標에 대하여는 登錄을 許容할 수 없다는 것이 本號의 精神이다.

여기서 國家, 民族이라 함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漢族, 鄂高족, 백의민족, 한국인, 미국인, 일본인등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現存하지 않는 國家名은 그 登錄을 許容하고 있다.

즉 신라, 백제, 고구려, 프리시아등은 그 登錄을 許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團體란 公益의인 團體 또는 非營利의in 團體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것이며, 著名한 故人이라 함은 우리 國家나 民族을 위하여 爲大한 業績을 남긴 위인이나 外國의 著名한 故人까

지를 포함한 概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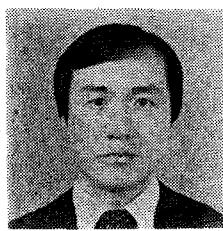
美國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前職 大統領으로서 故人이 된 사람의 성명의 경우에 未亡인이生存해 있는 경우에는 未亡人の 同意를 얻어야만 商標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未亡人 마저도生存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성명의 登錄이 可能한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祖上崇拜思想이 강한 우리나라의 實情에 비추어 볼 때에는 歷史的인 爲大한 人物의 성명을 商標로 登錄 許容하는데는 아무리 오래된 故人이라 할지라도 商標權 設定에는 慎重을 기해야 할 것이다.

本條項에서 虛偽로 表示한다 함은 真實과 다르게 表示하는 것을 말하며 謔謗이라 함은 이의 使用이 社會의으로 辱되게 함을 말한다.

또한 「侮辱」「惡評」이란 虛偽의 事實이든 真實의 事實이든 國家, 民族, 公益團體, 宗敎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관계를 賤視하거나 惡하게 評價하여 이를 辱되게 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國家, 民族에 대한 判例로써 제24류 플라스틱 고무, 페프 등에 出願된 「CORIAN·카리안」에 대해서 본원 상표가 설사 한글로 「카리안」이라고併書하였다고 하더라도 英文字 「CORIAN」이 「코리안」으로呼稱되는 것을 否認할 수 없으며 결국 國家名 「KOREAN」과呼稱이 거의同一하여 일반수요자간에 國家名으로 認識될것이고…」라는 大法院 判例에 비추어서도 단어의 첫 글자나 끝 글자가 原語와 相異 하더라도同一類似한呼稱을 말하는 경우에는 이를 國家, 民族에 해



宋 株 鉉  
<特許廳 審查官>

# 時論

## 目 次

- I. 머리말
- II. 商標法 第8條 商標登録의 要件
- III. 商標法 第9條 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號>

당된다고 함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그 호칭은 國家, 民族과 類似하다 할지라도 그 머릿글자 또는 끝글자가 原語와 다르므로 國家名이나 民族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는 等의 主張은 言語의 遊戲에 불과 한것이라고 믿어진다.

### 나. 商標法 第9條第1項第4號

公共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는 登錄을 받을 수 없다.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與否는 그나라의 傳統·生活慣習等 社會通念에 따라 다르겠지만 儒敎의 傳統이 綿綿이 흐르고 있는 우리의 生活慣習에서는 그基準이 다른나라에 비해 좀 엄격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男, 女의 裸體圖形이나 指定商品과의 관계에서 道德이나 社會公益에 反하는 것, 수요자에게 嫌惡感을 일으키는 文字나 圖形, 青少年들의 情緒를 해칠 우려가 있는 過激한 文字等은 登錄될 수 없는 것이다.

審查의 例에서 보면 「수류탄표 파자」「딴따라바」가 등록을 받지 못한 事例가 있다. 前者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過激한 印象을 심어 좀으로써 情緒를 해칠 우려성이 있는것이고 後者は 딴따라의 意味가 연예인들을 卑下하여 表現하는 用語로 第3者를 辱되게 할 우려가 있어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例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실을 놓고 그것이 公序良俗에 해당되느냐 與否를決定하는데 있어서 世代에 따라서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그 視角이 다름을 經驗할 때가 있

었다.

몇년전에 지정상품 酒類販賣業에 「술 속의 빈터」라는 씨어비스표가 出願되었는데 이것이 公序良俗에 저촉되는지 與否를 놓고 審查官會議에서 激論을 벌인 적이 있었다.

내 기억으로는 나이 좀 드신분들은 이러한 用語는 公序良俗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임으로 當然히 拒絕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用語가 왜 公序良俗에 저촉 된다고 主張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그 理由를 짐작 할 수 있을 것임으로 밝히지 않기로 한다.

다만 본인은 일반수요자에게 직감적으로 嫌惡感을 주거나 善良한 風俗을 素亂케 할 우려가 없는 用語에 대해서 이를 이상한 視角으로 想像해서 까지 本條項을 適用케 할 必要는 없다는 觀點에서 「술속의 빈터」는 公序良俗에 저촉되지 않는다는에 同參 하였으며, 이 씨어비스표는 결국 公序良俗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商標라는데 意見을 모았었다.

### 다. 商標法 第9條第1項第7號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使用하는 商標에 대하여는 이를 拒絕하게 되는 바 여기서는

첫째, 商標對 商標의 類似與否의 判斷과  
둘째, 商品對 商品의 類似與否의 判斷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先登録商標와 同一 類似한 商標의 登錄을 許與할 경우 수요자

일반은商品의出處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되어流通秩序의混亂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이를防止하자는 것이本條項의趣旨인 것이다.

本條項은 실제 심사에 있어서 商標法第8條第1項第3號와 아울러 가장 頻煩하게適用되는條項일 뿐 아니라先登録商標와類似性對比에 있어서도 여러類形의審決例 및大法院判例로因하여 그類否判斷에 있어 苦衷이 보통이 아니다.

商標의類似與否觀察의大前提인全體的, 離隔的,客觀的觀察을本旨로 하되여러가지 모양으로結合된形態의경우商標構成中 가장印象적인部分을要部觀察을위주로判斷해야할것이며, 그稱呼,外觀및觀念의세가지로구분하여상품에따라相異한比重을두어야할것이다.

이에 대하여商標審查基準에여러가지態樣의事例를열거해뒀지만본인의견해로는

① 商標의類似性對比에 있어「말표」가先登録商標일 경우他人이商號와結合하여「OO 말표」로出願했다면이는當然히類似로보아야할것이라는것이며, 이와같은경우「OO 말표」가先登録일때「말표」역시登錄받을수없을것임은두말할필요가없겠다. 물론이와反對되는判例나登錄例가있긴하나, 만약이러한경우類似하지않다고한다면수없이많은「말표」가탄생되어商標權者나需要者一般을保護하고자하는商標法의趣旨에반하는結果를야기케될可能性이있는것이다.

大法院이登錄商標「CROWN 또는 ROYAL」과「CROWN ROYAL」은類似하다고한判決과「CAMEL」과「CORONA CAMEL」은類似하다는判決은類似與否의判斷을明確하게밝혀주는좋은事例라고생각한다.

또한文字商標의일련불가분적인構成論議에대해서는어떠한文字끼리의物理的인結合을일련불가분적인것으로볼것이아니라구성된文字들을각각分離했을경우전혀다른의미를낳게될경우이를일련불가분적인구성으로판단타상표와의類似與否를觀察하여야한다는

생각이다.

즉「만수무강」과「만수」또는「무강」처럼 이를分離해서觀察해도觀念이類似할경우에는外觀을物理적으로두단어를결합한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다르다고는할수없는것이나「아기자기」「달동네」「산울림」등의경우「아기자기」와「아기」또는「자기」,「달동네」와「달」,또는「동네」,「산울림」과「산」또는「울림」은각각유사하다고할수는없을것이며이와같이두단어로分離하여전혀다른意味를가지게되는경우에는이를일련불가분으로판찰판단하여야할것이라고생각한다.

② 他人登録商標와類似與否判斷에있어서看過해서는안될事項이商品의類似與否判斷問題이다.

이는매우重要한問題이나우리의現實은商標法施行規則第10條(商品區分等)에의한商品區分에의하여區分된商品群에따라그類似性을거의획일적으로判斷하고있는實情이다.

그러나同一群이라할지라도오인혼동의우려가없는비유사商品이있을수있으며또한群이다르더라도오인혼동의우려가있는상품이있을수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유사상품에대한規定을定해놓긴했으나만족스러운것은될수없으며,우리審查官의수가대폭증員되어先進諸國과같이1인당審查處理目標量이적게 책정된다면그들과같이우리도商品對商品의類似與否判斷에많은時間을할애하여合理的인심사를할수있을것이다.

#### 라. 商標法第9條第1項第11號

商品의品質을誤認케하거나需要者를欺瞞할염려가있는商標는登錄을할수없다는本號의規定은私益보다는公益을強調한代表의인條項이라고볼수있다.

여기에서「商品의品質을誤認」한다함은

①同一商品에있어서商品質의좋고나쁨에대하여誤認하는경우와②다른種類의商品과의판례에서誤認을일으키게하는경우이다.

예컨대 「보리차」商標를 「옥수수차」에 使用하여 수요자가 「옥수수차」를 「보리차」로 오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계는 審查를 하면서 종종 경험하는 현상으로서 出願된 商標에 結合된 商品名과 指定商品이 다르므로 해서 거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것이다.

「예: ○○표 비타민제, 지정상품 ① 비타민제 ② 살균제」와 같은 경우인 것이다. ③ 需要者를 欺瞞한다 함은 指定商品과의 關係에서 他人의 登錄을 模倣하여 自己 商標로 登錄出願 또는 登錄한 것 같이 하거나 國內商品을 外國商品으로 混同케 하는등, 需要者를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最近에 問題가 되고 있는 것은 外國의 有名商標를 模倣하여 出願한 경우 이를 拒絕하고 있는데 대하여 出願人側에서는 國내에 별로 알려지지도 않은 商標를 外國商標와 類似하다는 理由만으로 거절하는 것은 法理에 맞지 않는 지 나친 處事라는 批判의 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의 當否를 떠나서 이제 우리의 商品이 世界를 누비고 있고 輸入自由化에 따라 外國의 商品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이젠 우리도 우리의 固有商標 우리의 商標를 개발하여 使用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우리의 商標를 개발하여 世界곳곳에서 그 명성을 펼치고 있는 우리의 企業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外國의 商標를 사용해야 장사가 잘되는 것만도 아니라 고 생각된다.

막연하게 外國商標를 부착한 商品만을 選好하

는 需要者의 心理와 이를 充足하기 위해서 外國商標를 模倣 使用하는 後進性을 이제 탈피해야 할 때가 된것이며 中進國 대열에 서 있는 우리가 工業所有權 盜用國의 汚名을 더이상 쓰고 있을 수는 없으며, 이를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또 한가지 本條項의 適用에 있어서 國內出願人이 外國文字만으로 出願할 경우에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다하여 거절하는 데 대한 問題이다.

이는 역시 英語, 佛語, 獨語等만으로 商標를 使用할 경우 ① 수요자 일반이 外國의 商品으로 誤認할 경우와 ② 우리말로 된 商標의 개발장려 ③ 우리말의 保護等의 側面에서 이의 登錄을 許容치 않고 있으나 現在 우리의 商標使用實態를 보면 電子·自動車等의 商品에 우리글로 表記된 商標는 거의 發見할 수 없는 것이 去來界의 現實이다.

또한 登錄된 商標는 國·英文 混用으로 실지 사용하는 商標는 英文만으로 二元化되 있으므로 해서 앞에서 열거한 拒絕理由의 趣旨에 부응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일 뿐만 아니라 出願人들이 이에 대하여 商標의 國際化 趨勢에 맞지 않다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問題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따라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本條項의 法精神은 商標法 第8條第1項第3號(商品의 性質表示) 同第9條第1項第6號 내지 第10號 規定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判断하여야 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略>

## ■ 특허제도 80년사 편찬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

특허청에서는 특허제도 시행 80년이 되는 1988년에 “특허제도 80년사”를 간행하고자 준비중입니다. 특허에 관련된 서류·사진·문헌기록 및 신문기사나 기타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특허제도 80년사 간행을 위하여 제공하여 주시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번지

특허청(특허제도 80년사 편찬실)

전화. 566-6101, 555-0661